

지회 운영 규정

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 지회 운영 규정

제정 2014. 01. 16.

개정 2014. 05. 08.

개정 2019. 08. 12.

개정 2022. 12. 13.

제1장 총 칙

제1조(근거 및 목적) 본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시·도지회 운영 규정 제5조 규정과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(이하 “장애인체육회”라 한다) 규약 제3조에 의거 지회로 설치된 읍·면·동 장애인체육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9. 8. 12.>

제2조(명칭 및 주소) 각 읍·면·동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회 지회로서 지역을 통할 할 수 있는 용어로 ○○○○장애인체육회라 정하고, 영문명칭도 정해야 하며 사무소는 각 읍·면·동 사무소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개정 2019. 8. 12.>

제3조(설치목적) 읍·면·동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가맹단체를 통할지도 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스포츠를 통한 시 장애인의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사업) 각 읍·면·동 장애인체육회는 제3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장한다.

1. 지역 장애인체육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결정
2. 각 가맹단체와 각급 장애인체육회의 육성지도 감독
3. 장애인생활체육 교실운영·대회 개최·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전개
4. 읍·면·동 및 시·도 간의 장애인체육 교류
5. 지역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장애인체육회가 주최, 주관, 승인한 사업에 대하여 참가, 주최, 주관, 후원, 지원 등
6.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해당 선수단 훈련 및 참가
7. 장애인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방 장애인체육의 육성
8. 특수학교 및 장애학생 체육의 육성
9.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 육성

10. 장애인체육 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
11. 장애인체육에 관한 홍보 및 각종 자료수집, 각종 간행물 발행
12. 지역의 장애인 체육정책 실현 및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·자문
13.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및 기타 필요한 사업

제2장 조 직

제5조(조직) 장애인체육회가 가맹을 승인한 가맹단체의 읍·면·동 지회가 읍·면·동 장애인체육회로부터 가맹을 승인받은 각 당해 지역 종목별 가맹단체로 조직한다.<개정 2019. 8. 12.>

제6조(권리) 각 읍·면·동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
1. 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.
2. 장애인체육회가 주최,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
3. 장애인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, 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.
4. 총회에 이사를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. <개정 2022. 12. 13.>

제7조(의무) 각 읍·면·동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.

1. 장애인체육회의 제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2. 사업계획서, 예산서 및 사업보고서, 결산서를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3. 장애인체육회 제 규정에 준하여 규약을 제정하여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고, 이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4. 임원의 선임 및 개선이 있을 때마다 이를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가맹 및 탈퇴) ① 각 읍·면·동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의 가맹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.

② 가맹 및 탈퇴에 관하여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가맹·탈퇴규정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한다.

제3장 임 원

제9조(임원) ① 이사회의 구성 및 성격은 장애인체육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준한다.

② 집행부의 선임임원 수는 각 읍·면·동 장애인체육회의 실정에 맞추어 운용할 수 있다.

제10조(선임임원) ① 임원의 선임, 보선 및 임기는 장애인체육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준한다.

- ② 읍·면·동 장애인체육회장에는 읍·면·동장을 당연직으로 추대하여야 한다.
- ③ 회장, 부회장, 사무국장은 집행부의 당연직 이사이다.
- ④ 이사 및 감사는 장애 유형별 분과위원회에서 동일한 비율로 추천하여 구성한다.

제11조(각종 위원회) ① 읍·면·동 장애인체육회는 필요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, 생활체육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- ② 각종위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2인 이내,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.
- ③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체육회 제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따로 정한다.

제4장 가맹단체

제12조(가맹자격)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의 읍·면·동 지회만이 읍·면·동 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한다. <개정 2019. 8. 12.>

제13조(기관) 읍·면·동 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한 가맹단체는 가맹단체별로 대의원총회와 이사회를 둔다.

제14조(규약 및 임원인준 등) ① 읍·면·동 가맹단체의 규약은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여 제정하고 읍·면·동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으로 유효하다.

② 읍·면·동 가맹단체의 임원은 당해 총회(이사회)에서 선임하여 읍·면·동 장애인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나, 필요한 경우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및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.

③ 임원인준 내용에 하자가 있거나 결격사유에 저촉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임원인준을 취소하여야 한다.

제15조(적용) 가맹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은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이사회 의결로 이를 따로 정한다.

제5장 자산 및 회계

제16조(자산의 구분) 읍·면·동 장애인체육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.

1. 소유동산 및 부동산
2. 기금

3. 회비
4. 장애인체육회 지원금
5.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
6. 사업 수익금
7. 기부금 및 찬조금
8. 기타 수입금

제17조(예산편성 및 결산) ① 사업계획 및 수입·지출 예산안은 매년 정기총회 개최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8조(기금 및 적립금)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는 특별회계로 한다.

제19조(회계연도) 회계연도는 장애인체육회와 동일하게 한다.

제20조(회계감사)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가맹단체의 업무 및 회계업무를 감사할 수 있다.

제6장 사무국

제21조(사무국) ① 읍·면·동 장애인체육회는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
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,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.

③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직무를 관장하며, 직원의 임면은 인사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되, 특별한 사유 없이는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.

제22조(직제 및 규정) ① 사무국의 기구, 조직,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이를 따로 정한다.

② 사무국은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주요 사업의 추진계획 및 성과, 관련 규정 등을 공시한다.

제7장 보 칙

제23조(준용) 읍·면·동 지회 규약과 상이한 경우와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장애인 체육회 제 규정을 준용할 수 없는 것은 장애인체육회에서 별도 지시한다. <개정 2019. 8. 12.>

제24조(제한사항) 본 규정 및 제 규정 등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체육회는 제6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하거나 장애인체육회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, 회수,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.

부 칙(2014. 1. 16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4. 5. 8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 8. 12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 12. 13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